청원 원문

tay tay

1. 청원의 취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

2. 청원의 이유 및 내용

가. 다가올 22대 총선에서는 위성정당 제도를 혁파하고, 새롭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선거법 협상은 진전이 없고 현행 선거법 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히려 꼼수 위성정당, 참칭정당이 대거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와 희망을 찾는 경쟁의 장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도권을 잡아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죽기살기식의 정쟁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발호를 걱정하며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대신 병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와 소수 정당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선거법의 대원칙인비례성과 대표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연동형제도를 적정하게 보완하면 위성정당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 우리 시민단체는 이 문제의 타개책을 찾기 위해 10여 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선거법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 총선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점에서, 병립형을 채택하지 않고 완

전 연동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Sec. 18. 6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되, 이른바 캡 조항도 제거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을 증 원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즉 지역구 선거구에서 통합 또는 소멸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만큼을 그대로 국회의원 수로 존치시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국희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후보자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소결

그 결과

- 1)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5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고 (안 제21조제1항 개정),
-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 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 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며 (안 제189조 제2항제1호개정),
- 3)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성정당 창당을 통한 기득권 유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해야 함을 (공직선거법 제 47조제1항 개정)

제안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 우리는 최소주의에 입각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토대로 더 진전된 새 합의안이 만들어져 다음 총선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주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나아가 이 합의 정신을 기초로 우선 다음 총선에서 정책선거의 참모습이 발현되기를 기원하며, 그 개정의 물결로 헌법 개정도 달 성되어 상생과 협치의 새로운 합의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합니다.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조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를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55명을 합하여 30°명으로한다."로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추천할 수 있다"를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추천한다"로 한다.

제189조제2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U89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다.
- 1.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이하 이 조에서 "연동 배분 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 배분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 배분 의석수는 0으로 한다.

연동 배분

= [⁻/(국회의원¹경수-、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의석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 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18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 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 ——
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	<u>245명</u> 과 55명
<u>을</u> 합하여 30∘명으로 한다.	<u>0</u>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
	세47조 (88의 구모자구선) ①
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	
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	
을 후보자 (이하"政黨推龐候補者"	(이하 "정당추천후보자"
라 한다) 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마,	라한다) 로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
비 례 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의	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총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	수의 100분의50 이상의 후보자를
여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워
	선거에서 그 정수의 100분의 50이
	<u>상을 반드시 추천한다</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
분과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還)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 정당	
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 석수 (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 의석수"라 한다) 는 다음 계산식 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 으로 한다.

1.5

연동배분의석수 = f (국회의워 정 수 - 의석할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 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 회의원당선인수 1 + 2

2. • 3. (생략)

③ - ⑧ (생략)

<u> </u>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 정
수 - 의석할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
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
회의원당선인수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